

## 1. 개정이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7호, 2026.7.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2호에 의무상환 기납부액을 병기하여 채무자가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오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별지 서식 제80호의2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유의사항에 열거된 전자송달 서류 범위에 ‘독촉장’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제42조제1항제10호로 개정(’26.7.1.)됨에 따라 위임 조항 규정 변경(안 제33조)

나. 원천공제(변경·추가) 통지서 서식 중 변경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란에 ‘기납부액’을 병기(안 별지 서식 제12호)

다.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서식 중 ‘유의사항’ 제1항에 ‘독촉장’ 명시(안 별지 서식 제80호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26. 7. 13 ~ 8. 24.)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사전협의 완료('26. 7. 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제9호”를 “영 제4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         |      |  |
|----------------------------------------------------------------|-------|------------------|---------|------|--|
| 원 천 공 제 (변경 · 추가) 통 지 서                                        |       |                  |         |      |  |
| (채무자용)                                                         |       |                  |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         |      |  |
| 원천공제기간                                                         |       |                  |         |      |  |
| 통 지 내 용                                                        |       |                  |         |      |  |
|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       |                  | 원천공제의무자 |      |  |
| 소득구분                                                           | 의무상환액 | 원천공제금액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
| 당초                                                             | 근로소득  | 원 (매월 원)         |         |      |  |
|                                                                | 사업소득  | 원 (매월 원)         |         |      |  |
|                                                                | 연금소득  | 원 (매월 원)         |         |      |  |
| 합 계                                                            |       | 원 (매월 원)         |         |      |  |
| 변경                                                             | 근로소득  | (기납부 원 원) (매월 원) |         |      |  |
|                                                                | 사업소득  | (기납부 원 원) (매월 원) |         |      |  |
|                                                                | 연금소득  | (기납부 원 원) (매월 원) |         |      |  |
| 합 계                                                            |       | (기납부 원 원) (매월 원)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10mm×297mm(보 존 용 지 60g/㎡ (재활용품))

## 전자송달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 2. 전자송달<br>관련<br>기재사항 | 전자우편주소          |        |  |
|                       | 휴대전화번호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송달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임받은<br>사 랫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전자송달은 납부고지서, 독촉장,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등 의무상환액의 고지·독촉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정보통신망(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및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전자송달이 이루어지면 전자송달한 서류명과 송달 사실을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서류가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 때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신규·변경·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철회할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br>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br>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br>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br>1. ~ 3. (생    략)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br>영 제42조제1항제10호-----<br>-----<br>-----.<br>1. ~ 3. (현행과 같음) |